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40호)

2025.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 충 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개정안의 취지 및 구성	5
1. 개정안의 취지	5
2. 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7
3. 총괄검토	12
V. 조문별 검토	14
1.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법 체계 정비	14
2. 임업인 체계 개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0
3. 임업 진흥과 사유림경영, 산촌 진흥의 기본원칙	31
4. 임산물의 품질관리	35
5.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9
6. 임산물의 소비 활성화 지원	43
7. 스마트임업 육성 및 지원센터 지정	46
8. 임산물의 유통·수입 등에 관한 근거 마련	52

9.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58
가. 사유림경영지도 제도	60
나. 산림경영관리시설의 설치	63
다.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65
10.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67
11.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 정비	70
12. 기타 검토 사항	77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81
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추가	83
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목적 및 사업 추가	84
13. 다른 법률로의 이관 사항	86
14. 보칙 및 벌칙	103
15. 부칙	11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3. 8. 7.

다. 회 부 일 : 2023. 8. 8.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낙후한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되었음.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66% 이상이 사유림임에도 불구하고, 사유림경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이 있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임가의 소득수준은 농업 대비 75%, 어업 대비 59%('24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임.

여기에 가속화되는 고령화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로 인하여 임업의 근간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시급히 정비하고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산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임업의 범위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추가하고, 사유림경영, 후계임업인, 전문임업인, 경영임업인, 청년임업인, 스마트임업 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다. 법률의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신설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사유림경영·임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예비임업인 또는 도시민의 소득 창출 및 산촌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바. 임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 사. 임업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산림의
융·복합경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아.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임산물 유통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 자. 국내산 임산물 소비 촉진 및 임산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 차. 스마트임업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스마
트임업 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7조 및 제18
조).
- 카.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4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신설함(안 제19조).
- 타. 사유림경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0조).
- 파. 사유림경영지도원의 배치, 임무 등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신설함(안
제22조).
- 하. 산림경영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산주,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환
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하여 사유림경영분
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24
조).
- 거. 전문임업인과 경영임업인의 선정·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7조).

너.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육성·고용 등에 대한 지원, 산림명문가의 선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52조).

러.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사유림 경영·임업·산촌 관련 고용 창출 및 창업 지원, 연구개발 성과·기술 실용화 등 기존의 수행 사업을 명확히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기 수행 중인 산림인증제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3조).

머. 수입 임산물의 사용 및 임산물의 유통·생산 등에 관한 벌칙 조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에서 이관·신설함(안 제61조).

IV. 개정안의 취지 및 구성

1. 개정안의 취지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은 1997년 제정된 「임업진흥촉진법」에 낙후된 산촌을 진흥하고 산주의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업경영의 활성화, 산촌진흥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산림복합경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제명을 변경하여 2001년 개정(2001. 12. 31.)되었음.

그런데 우리나라 임업의 경우, 육림업은 조림 단계에서부터 숲가꾸기 사업 또는 벌기령 도래 시까지 별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비용을 소득으로 회수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산림경영은 산림의 66%를 차지하는 사유림¹⁾의 산주(220만 명) 중 3ha 미만의 소규모 산지를 소유한 산주가 전체의 85.9%(189만 명)를 차지²⁾하고 있으며, 자신이 보유한 산림에서 직접 임업을 경영하는 산주는 2만 5천여 명에 불과³⁾하는 등 상당히 영세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실제 2024년 임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가소득은 연간 3,841만원으로, 이는 농가소득(5,060만원)의 75.9%, 어가소득(6,365만원)의 60.3%에 불과한 수준으로 파악됨.

1) 2020년 기준 산림면적 : 630만ha (국유림 166(26%), 공유림 48(8%), 사유림 416(66%))

2) 2023년말 기준 1인당 사유림 평균 소유 산림규모는 1.9ha임

3) 2020년말 기준

최근 임업인의 고령화, 산촌의 인구감소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산림 및 임업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임업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임업의 특수성 및 사유림의 영세한 경영 실정 등을 반영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해 보임.

이에 개정안은 법의 제명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입법 목적에 사유림경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소득과 권익을 증진함을 명시하는 한편, ‘사유림경영·임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등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입법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고, 산림청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음.

2. 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개정안은 「임업진흥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기존 9장 63개조의 조문을 9장 61개조로 정리하면서 안 제2조(정의)에 “사유림경영”, “스마트임업”, “전문임업인”, “청년임업인”을 정의하고,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7조(스마트임업 육성) 등을 신설하며, 안 제3장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신설하여 안 제20조(사유림경영의 기본원칙) 내지 안 제24조(사유림경영분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사유림경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예비임업인, 청년임업인, 산림명문가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53조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조림·숲가꾸기·벌채 등 산림의 공통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 제13조(산지목재비축계약 등)부터 제15조(행위제한)까지,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부터 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까지, 제30조(청문) 중 품질인증의 취소,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수수료) 중 품질인증 신청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중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한편,

안 제19조(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안 제22조(산림경영지도원), 안 제55조(보고 및 검사) 중 임산물 수입 관련 사항, 안 제60조(벌칙)의 임산물의 유통·수입에 관한 사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분리하여 통합·규정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음.

개정안의 구성 체계를 현행법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 현행법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구성 비교 】

「임업진흥법」	「임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명 : <u>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u>	제명 : <u>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u>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신 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신 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 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제2장 임업 진흥
제3조(임업경영·산촌진흥의 기본원칙)	제7조(임업 진흥의 기본원칙)
<신 설>	제8조(임산물의 품질관리)
제5조(소유구조 개선)	제9조(임업 생산성 향상 지원)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제10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제9조(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제11조(산림의 융·복합경영 지원)
제7조(유통구조 개선)	제12조(유통 활성화 지원)
제12조 삭제 <2012. 5. 23.>	<삭 제>
제13조(산지목재비축계약 등)	<삭 제>

「임업진흥법」	「임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4조(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삭 제>
제15조(행위제한)	<삭 제>
제16조(산림의 이용·지원)	<삭 제>
<신 설>	제13조(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0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제14조(가공 활성화 지원)
<신 설>	제15조(소비 활성화 지원)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제1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신 설>	제17조(스마트임업 육성)
<신 설>	제18조(스마트임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신 설>	제19조(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신 설>	제3장 사유림경영의 활성화
<신 설>	제20조(사유림경영의 기본원칙)
제6조(경영구조 개선)	제21조(사유림경영 지원)
<신 설>	제22조(사유림경영지도 등)
<신 설>	제23조(산림경영관리시설의 설치)
<신 설>	제24조(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제4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제25조(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제18조의3(생산과정의 확인 등)	제26조(생산과정의 확인 등)
제18조의4(품질검사)	제27조(품질검사)
제18조의5(폐기명령 등)	제28조(폐기명령 등)
제18조의6(품질표시 등)	제29조(품질표시 등)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제30조(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제18조의8(정보공개)	제31조(정보공개)
제18조의9(통계조사)	제32조(통계조사)
제18조의10(수출 촉진 등)	제33조(수출 촉진 등)

「임업진흥법」	「임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u><신 설></u> <u>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 등 지원)</u> <u>제9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u> <u>제17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u> <u>제17조(임업후계자 등의 육성)</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제3조의2(임업인의 날)</u>	<u>제5장 임업인의 육성</u> <u>제34조(산림경영 교육·훈련 등 지원)</u> <u>제35조(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u> <u>제36조(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u> <u>제37조(임업인 등의 육성·지원)</u> <u>제38조(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지원)</u> <u>제39조(청년임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u> <u>제40조(산림전문가의 선정)</u> <u>제41조(임업인의 날)</u>
<u>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u> <u>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u> <u>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u> <u>제18조의13(품질인증의 표시)</u> <u>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u> <u>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u> <u>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u> <u>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u> <u>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u> <u>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u> <u>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u> <u>제21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해제 등)</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제5장 산촌의 진흥</u> <u>제22조(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u> <u>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u> <u>제24조(산촌에 대한 조사)</u>	<u>제6장 산촌 진흥</u> <u>제42조(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u> <u>제4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u> <u>제44조(산촌조사)</u>

「임업진흥법」	「임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5조(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시행자)	제46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제27조(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제47조(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제27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48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7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9조(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8조(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제50조(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제29조(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제51조(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제7장 한국임업진흥원
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제52조(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53조(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29조의4(한국임업진흥원의 운영 등)	제54조(한국임업진흥원의 운영 등)
제7장 보칙	제8장 보칙
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제55조(보고 및 검사)
제30조(청문)	제56조(청문)
제30조의2(수수료)	제57조(수수료)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9장 벌칙
제32조(벌칙)	제60조(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과태료)	제61조(과태료)

3. 총괄검토

개정안은 목재비축 및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우리나라 임업 및 사유림경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고, 산림청도 이와 같은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만, 현행법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되는 조문은 그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으로의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을 통하여 동 법으로 이관되는 조문의 경우 다른 법률과 중복된 규정은 없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조림·숲가꾸기·벌채 등 산림의 공통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⁴⁾의 경우 그 필요성을 감안할 때 단순히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로의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현행 「산림자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동 법으로 이관하는 조문⁵⁾의 경우에도 개정 시 중복 규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 법 제13조(산지목재비축계약 등)부터 제15조(행위제한)까지,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부터 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까지, 제30조(청문) 중 품질인증의 취소,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수수료) 중 품질인증 신청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중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안 제19조(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제1항~제5항, 안 제22조(사유림경영지도 등), 안 제55조(보고 및 검사)제1항제1호, 안 제60조(벌칙)제3항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의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⁶⁾.

또한,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산림청은 개정안에 따라 각종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911억 3,500만원(연평균 582억 2,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스마트임업 육성(안 제17조), 스마트임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안 제18조)	500	5,000	10,000	10,000	10,000	35,500	7,100
국비	250	2,500	5,000	5,000	5,000	17,750	3,550
지방비	250	2,500	5,000	5,000	5,000	17,750	3,550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24조)	9	9	9	9	9	45	9
청년임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안 제39조)	4,128	4,244	4,378	4,492	4,108	21,350	4,270
국비	2,064	2,122	2,189	2,246	2,054	10,675	2,135
지방비	2,064	2,122	2,189	2,246	2,054	10,675	2,135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안 제45조),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안 제46조),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 (안 제47조)	34,014	86,342	37,718	37,718	37,718	233,510	46,702
국비	17,007	43,171	18,859	18,859	18,859	116,755	23,351
지방비	17,007	43,171	18,859	18,859	18,859	116,755	23,351
추가재정소요	38,651	95,595	52,105	52,219	51,835	291,135	58,227
국비	19,330	47,802	26,057	26,114	25,922	145,955	29,191
지방비	19,321	47,793	26,048	26,105	25,913	145,180	29,036

주 1. 산촌조사는 2024년 기시행으로 추가예산 소요가 없으며, 산촌진흥특화사업은 2024년에 8개소, 2025년부터 19개소에 대해 사업을 시행중이며, 1개소당 사업기간은 총 4년으로 가정

2. 국비 및 지방비(시·도 및 시·군·구 합산)의 분담률은 50:50으로 가정

3. 단수 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산림청 작성자료로 기재부와 재정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임

6) 이와 같은 취지의 「산림자원법」 개정안은 미발의된 상태임

V. 조문별 검토⁷⁾

1.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법 체계 정비

개정안은 법의 제명을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에 임업인의 소득을 증진과 지역 소멸 대응을 추가하며,

임업의 정의를 변경하고 사유림경영의 정의를 추가하는 한편, 사유림경영·임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유림경영·임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⁸⁾ 임업인의 소득과 권익을 증진하고, 산촌지역의 진흥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소멸에 대응하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營林業: 산림

7) 경미한 문구 수정, 단순 조 제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였음.

현행	개정안
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용 종자·묘목 생산, 조림(造林), 숲가꾸기 등 산림을 경영하는 업),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산림서비스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사유림경영”이란 사유림 안에서 조림·숲가꾸기·입목수확·임도 및 산림경영관리시설 설치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사유림경영·임업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유림경영·임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유림경영·임업의 현황과 전

현 행	개 정 안
	망 2. 사유림경영·임업의 진흥 방향 및 목표 3. 사유림경영·임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사유림경영·임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사유림경영·임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 6. 사유림경영·임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사유림경영·임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66%에 달하는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또한, 산촌지역은 고령화, 청년 유출,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지역 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전국 466개 산촌 중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은 2020년 382개 지역에서 2024년 424개 지역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인구소멸 고위험 산촌지역 추이(2020년~2024년) 】

(단위: 개수, %)

등급	명칭	소멸 위험지수	2020	2021	2022	2023	2024
1	소멸위험 매우낮음	1.5 이상	2 (0.4)	1 (0.2)	1 (0.2)	1 (0.2)	1 (0.2)
2	소멸위험 보통	1.0-1.5 미만	1 (0.2)	1 (0.2)	1 (0.2)	1 (0.2)	1 (0.2)
3	주의단계	0.5-1.0 미만	8 (1.7)	7 (1.5)	7 (1.5)	7 (1.5)	7 (1.5)
4	소멸위험 진입	0.2-0.5 미만	73 (15.7)	50 (10.7)	50 (10.7)	42 (9.0)	33 (7.1)
5	소멸고위험	0.2 미만	382 (82.0)	407 (87.3)	407 (87.3)	415 (89.1)	424 (91.0)
총계			466 (100.0)	466 (100.0)	466 (100.0)	466 (100.0)	466 (100.0)

※ 주: 산촌소멸지수란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을 1로 가정했을 때, 65세 이상 고령인구 기준 20~39세 가임 여성인구의 비율

※ 주: 2024년 산촌소멸지수는 0.13으로 소멸고위험 단계로 나타남

※ 자료: 2025 산림·임업 전망(국립산림과학원)

한편, 현행법에는 임업의 범위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 다양한 산림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유림을 경영하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이용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업 관련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제명에 사유림경영을 추가하고 법의 목적에 ① 사유림경영에 대한 사항과 ② 임업인의 소득 증진, ③ 산촌지역의 지역 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임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유림경영’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며,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에 사유림경영을 포함시킴으로써 산주와 임업인 중심의 적극적인 산림경영과 소득사업을 통해 국토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험을 완화하는 한편, 종합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환경부 소관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보육·사육·판매 등의 영업허가를 관리 중이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축산법」에서 동물을 사육하거나 개체를 증가시키는 것은 축산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임업’의 범위에서 ‘야생조수사육업’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산림청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임.

또한, 농촌진흥청은 임업의 범위 중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하고 있는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를 하는 도시지역의 생활 공간’과 의미가 상충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나,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은 현행법에 따른 임업의 정의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농업과 정원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반대하는 입장임.

2. 임업인 체계 개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임업인 관련 체계를 개편하고, 개편된 임업인 체계에 부합하도록 임업인의 교육 등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여 임업인의 육성에 관한 장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34조~제4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u>자</u>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자</u> 를 말한다. <u><신설></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u>사람</u>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사람</u> 을 말한다. 4. “후계임업인”이란 임업인으로서 <u>사유림경영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u> 을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 <u>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u> 을 말한다.	5. “전문임업인”이란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지식을 갖춘 후계임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독립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u>자</u> 를 말한다. <u><신설></u>	6. “경영임업인”란 산림경영에 대한 능력·소양을 갖춘 후계임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예비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임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실습 또는 창업 준비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u>시·도지사</u>는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u>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려는 자</u>를 대상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 업무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교육·훈련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교육·훈련등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교육·훈련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청년임업인”이란 임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u>제5장 임업인의 육성</u> 제34조(산림경영 교육·훈련 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u>임업인</u>을 대상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 업무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교육·훈련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교육·훈련등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교육·훈련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현행	개정안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교육·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u><신설></u>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교육·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u>⑦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준수 여부,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교육·훈련등 프로그램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	제35조(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4조제7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4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34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

현행	개정안
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u>제17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u> ①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림 분야 계열학교가 실시하는 임업실습교육, 임업창업교육 등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17조(임업후계자 등의 육성)</u> ① 산림청장 또는 <u>시·도지사는</u>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u>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u>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u>시·도지사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독</u>	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u>제36조(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u> ①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림 분야 계열학교가 실시하는 임업실습교육, 임업창업교육 등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37조(임업인 등의 육성·지원)</u> ① 산림청장 또는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전문임업인을 선정하고 전문임업인의 육성에</u>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현행	개정안
립가를 선정하고 독립가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u>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립가로 선정된 자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u>선발 또는 선정</u>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u>선발 또는 선정</u>을 취소하여야 한다. 1. <u>임업후계자 또는 독립가가 선발·선정</u>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u>임업후계자 또는 독립가가 사망</u>한 경우 3. 이 법 또는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u>임업후계자 또는 독립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자가</u> 그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임업후계자 또는 독립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경우</u> <신 설>	따라 <u>경영임업인을</u> 선정하고 <u>경영임업인의</u>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u>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u>전문임업인으로 선정된 자 또는 경영임업인으로 선정된 자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u>선정</u>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u>선정</u>을 취소하여야 한다. 1. <u>전문임업인 또는 경영임업인이 선정</u>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u>전문임업인 또는 경영임업인이 사망</u>한 경우 3. 이 법 또는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u>전문임업인 또는 경영임업인으로 선정된 자가</u> 그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전문임업인 또는 경영임업인으로 선정된 경우</u> 제38조(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현행	개정안
	육성·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이 임업에 안정적으로 진입·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청년임업인의 경우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39조(청년임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임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가 청년임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40조(산림명문가의 선정) ① 산림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 직계존비속)에 걸쳐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산림명문가로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임업인의 날) ① 임업·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업인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산림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하여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명문가의 선정기준, 선정 및 취소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임업인의 날) ① 임업·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업인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법에 따른 임업인의 체계는 임업인⁹⁾과 임업후계자¹⁰⁾, 독립가¹¹⁾

9) 현행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요건은 다음과 같음

1. 3헥타르 이상 경영
2. 1년 중 90일 이상 종사
3.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4. 「산림조합법」 조합원으로서 임업 경영

10) 현행법 제2조제4호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요건은 다음과 같음

1. 55세 미만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 가. 개인독립가의 자녀
 -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
 -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 대부분거나 분수림 설정
2.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

11) 현행법 제2조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독립가 요건은 다음과 같음

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체계는 너무 단순하여 각 임업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함.

예컨대 임업후계자는 현재 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경영을 하려는 자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 임업을 경영하지 않아도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하에서는 임업경영 기간에 따라서 임업인이 구분되지 않아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어렵다는 것임.

이에 개정안은 임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종사하는 자를 예비임업인과 임업인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임업인을 각 요건에 따라 후계임업인, 전문임업인, 경영임업인으로 구분하며, 임업인과 예비임업인 중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 청년임업인으로 정의하는 한편,

【 임업인 체계 개편(안) 】



※ 자료: 산림청

1. 개인독립가(個人篤林家)

- 가. 모범독립가 : 300헥타르 이상 경영, 조림 실적 100헥타르 이상
- 나. 우수독립가 : 100헥타르 이상 경영, 조림 실적 50헥타르 이상
- 다. 자영독립가 : 5헥타르 이상 경영, 유실수 3헥타르 이상 조림

2. 법인독립가

개편된 임업인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임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산림명문가 등에 관한 조문을 개정 및 추가하여 ‘제5장 임업인의 육성’에 관한 장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임업인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각 임업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및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임업인을 각 요건에 따라 후계임업인, 전문임업인, 경영임업인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려는 취지이나, 정의 규정은 후계임업인 중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자를 각각 전문임업인과 경영임업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후계임업인이 전문임업인과 경영임업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게 조문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40조제1항은 요건을 갖춘 ‘사람’을 산림명문가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산림명문가 선정대상을 ‘가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선정의 대상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현행법의 제정 이후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임업인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업인의 체계 개편 및 이

에 따른 임업인 육성에 관한 조항의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임.

반면,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는 임업인의 체계 개편은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기보다는 현장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현행 제도(임업후계자 및 독립가)를 존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업인 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기하였음.

3. 임업 진흥과 사유림경영, 산촌 진흥의 기본원칙

개정안은 임업 진흥과 사유림경영, 산촌 진흥의 기본원칙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 안 제20조, 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3조(임업경영·산촌진흥의 기본원칙) ① 임업경영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산림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산림은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 생물다양성, 야생 동·식물의 서식조건 및 자연경관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3. 산림은 국민의 보건·휴양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4. 산림은 임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② 산촌진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임업진흥의 기본원칙) 임업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산림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산림은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 생물다양성, 야생 동·식물의 서식조건 및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 등 산림의 공익기능이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되어야 한다. 3. 산림은 국민의 보건·휴양·치유 및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되어야 한다. 4. 산림은 임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영되어야 한다. 제42조(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산촌진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개정안
1. 산촌을 산림관리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산림자원의 보전·증식을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2. 산림생태계 및 동·식물 보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3.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u><신 설></u> <u>제22조(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u>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촌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신 설></u>	1. 산촌을 산림관리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산림자원의 보전·증식을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2. 산림생태계 및 동·식물 보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3.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u>4. 산촌은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u> <u><삭 제></u> <u>제20조(사유림경영의 기본원칙) 사유림경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u> <u>1. 사유림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산림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경영되어야 한다.</u> <u>2. 사유림은 임업소득(임업인의 소득 중 임업을 통해 얻는 소득)¹²⁾을 향상하고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영되어야 한다.</u>

현행	개정안
	3. 사유림은 국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임산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경영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임업경영·산촌진흥의 기본원칙과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유림경영을 법 체계에 포함시키고 임업 및 산촌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본원칙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임업 진흥, ② 사유림경영, ③ 산촌 진흥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는 개정안 체계에 부합하도록, 각 장의 첫 조문으로 각 사항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바,

이하에서는 각 조문별로 개별적으로 검토하였음.

첫째, 임업 진흥의 기본원칙의 경우 기존의 임업경영의 기본원칙에서 산림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기능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업의 기능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업 정책 공감대 형성 및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12) ‘임업소득(임업인의 소득 중 임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임업소득’

둘째, 사유림경영의 기본원칙의 경우 개정안을 통해 새로 신설하는 조문으로, 사유림경영을 법 체계 내에 포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산림으로서의 공익적 측면과 임업인의 사익(임업소득 및 삶의 질), 국민에 대한 안전한 임산물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우선순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산촌진흥의 기본원칙의 경우 기존의 규정에서 지역균형 발전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 중 산촌지역은 7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산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¹³⁾

다만, 산촌진흥의 기본원칙은 조 제목을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본문과 그 내용이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과 다른 기본원칙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조 제목을 ‘산촌진흥의 기본원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임.

13) 산촌 지역은 전국 12개 시·도, 108개 시·군, 468개 읍·면이 해당되며, 면적은 426만ha로 국토의 43%이나 인구는 140만명으로 2.7% 수준

(참고) 산촌(읍·면)의 정의(「산림기본법」 제2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2조)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4. 임산물의 품질관리

개정안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임업진흥을 위하여 임산물 및 임산 가공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임산물의 품질관리) ① 산림청장은 임업진흥을 위하여 임산물 및 임산 가공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임산물 우수관리·품질인증 및 이력 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4.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5. 유전자변형임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임산물 및 임산 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8. 임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임산물 및 임산 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산물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4)에 따라 농산물에 포함되므로, 임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는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으로 수행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중국산의 국내산 둔갑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16)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1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5조의2(권장품질표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포장 겉면에 등급·당도 등 품질을 표시(이하 “권장품질표시”라 한다)하는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4조(이력추적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하는 자
2. 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이하 생략>

제79조(농산물의 검사) ① 정부가 구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누에씨 및 누에고치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법적 조치 등 실효적 단속이 미비¹⁷⁾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임산물 우수관리·품질인증 및 이력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임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등 임산물 및 임산 가공품에 대한 품질관리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으로,

임산물 관련 보조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 등을 관리하며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¹⁸⁾하고 있는 산림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임산물 품질관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임산물의 생산지가 아닌 일반음식점 위주로 단속¹⁹⁾을 하는 등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임산물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임.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과 같이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관리 업무 등을 산림청장이 수행하는 경우 상당한 부작용²⁰⁾이 우려되

16) 중국산 표고버섯을 대량 수입 후 국내산으로 재포장하여 불법유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사 中) → 산림청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신고('25.6월)를 통해 위반사항 인지

17) 전체 농산물 중 임산물의 원산지 단속 비율: ('20) 4.3% → ('22) 3.9 → ('24) 3.4

18) 전문인력: 21명(본청 임산물 소득 담당자 13, 연구자 8)

19) 산림청에 따르면, 임산물은 생산지 원산지 변경(표고), 2차 가공을 통한 불법유통(산양삼)이 많으므로, 소비지(음식점 등)보다 생산지 또는 가공·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함

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임산물에 대한 유전자변형 표시사항, 안전성조사에 대한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항이므로 안 제8조제2항제5호·제6호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0) 농산물과 임산물을 함께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 시 중복 방문, 임산물과 농산물의 구분이 모호하여 업무 권한의 책임성과 명확성 확보 곤란, 관리 업무 이원화에 따른 행정 인력·예산 중복 소요, 피규제자의 혼란과 국민 불편 우려

5.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현행법은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통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을 받은 자(이하 ‘유통시설 운영자’)에게는 임산물 유통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유통시설 운영자의 임산물 유통정보 제공 의무를 삭제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임산물 유통정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7조(유통구조 개선)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직거래의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산물 유통시설의 설치·운영 등 <u>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u> 를 할 수 있다.	제12조(유통 활성화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직거래의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산물 유통시설의 설치·운영 등 <u>임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u> 를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임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u> 목재 종합 집하장 등 임산물 유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임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u> 산지종합유통센터 등 관련 시설을 임산물 유통시설 ²¹⁾ 설치·운영하는 자에

현행	개정안
설자금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u>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 유통정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u> <u><신 설></u>	계 시설자금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u><삭 제></u> <u>제13조(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임산물 유통정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은 유통시설 운영자가 임산물의 품목별 유통물량과 가격 등의 유통정보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21) ‘관련 시설을 임산물 유통시설’ → ‘임산물 유통시설을’

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유통시설 운영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아니라 정보를 제공받는 객체가 되어야하므로 법률과 현장의 적용이 서로 상충되는 상황임.

한편, 현재 산림청은 유통시설 운영자 뿐만 아니라 임산물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나, 별도의 법적 근거는 부재함.

【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 개요 】

- (개요)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 가격, 유통(시장) 동향에 관한 종합적 정보를 DB화한 유통종합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
 - * 1997년부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인터넷 서비스로 시스템을 구축·운영
 - * 정보 제공 : 밤, 대추, 표고, 꽃감, 더덕, 고사리 등 임산물 및 조경수 등(36품목)
- (사업내용) 전국 지역산림조합원을 활용한 임산물의 시장, 가격 정보 조사를 통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정보의 신뢰도 제고
 -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관리(지역별 가격 업로드), 임산물 홍보 등
 -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를 산림조합중앙회에 보조금으로 지원
 - 임산물 온라인도매시장(브랜드샵) 운영
 - 공영 모바일라이브 방송
 - * 우수 중소기업, 지역 특산품 등 육성제품을 공영홈쇼핑 채널을 통한 판로 지원
- 연간 소요 예산 : 401백만원
 - 수행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 '97년부터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산림조합중앙회)

※ 자료: 산림청

이에 개정안은 현장과 부합하지 않는 현행법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효율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임산물의 생산·가격 정보 등 유통 종합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 보장 및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유도하여 임산물의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임.

6. 임산물의 소비 활성화 지원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내산 임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임업소득을 늘리기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소비 활성화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산 임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임업소득을 늘리기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대상,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 등은 임산물 소비촉진 공모사업²²⁾, 시장친화형 임산물 가공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²³⁾, 임산물 공영홈쇼핑 지원 사업²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2) 임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우수임산물 전시박람회, 청정임산물 품평회

23) (1~2월) 설명절 임산물 기획전, (5월) 임산물 대표축제 「숲푸드 대축제」

(8~9월) 추석명절 임산물 기획전, (11월) 가을철 임산물 판매기획전

(연중) 임산물 활용 신상품 개발·경영 컨설팅, 먹거리임산물 체험·교육 ‘숲푸드데이’ 운영, 온라인 임산물 소비 홍보(네이버·우체국쇼핑, 쿠팡 등), 블로거·인플루언서 활용 숲푸드 체험단(150명/년) 운영

24) 16개 임산물 품목 방송 2회(본방송 1회, 재방송 1회) 진행, 홈쇼핑 상품화 작업(상품개발, 포장디자인 개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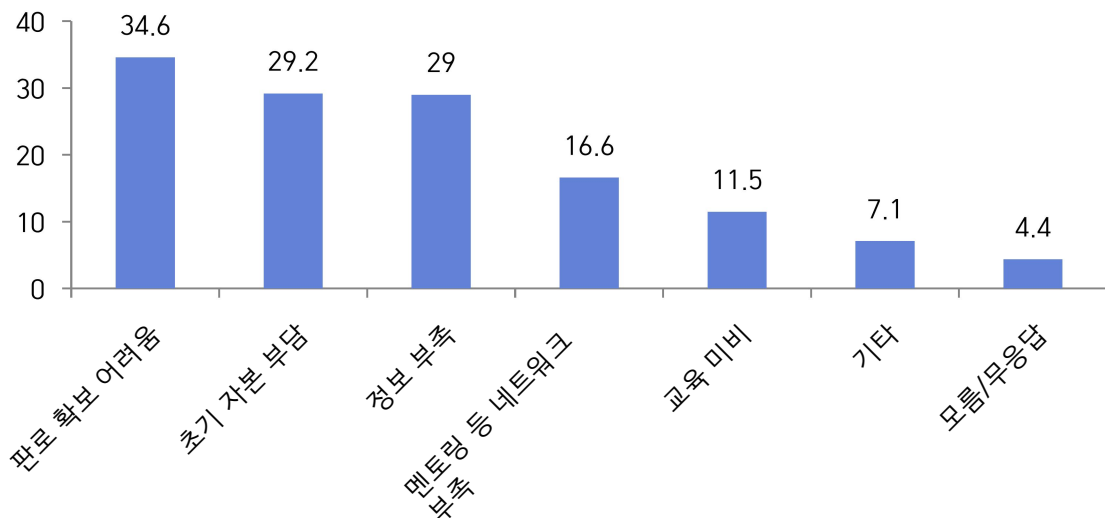
임산물은 농수산물에 비해 소비량이 적고, 경영규모가 영세하여 생산된 임산물의 브랜드화 및 제품 개발 등의 역량이 현실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실제로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임가의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시 겪는 어려움으로 ‘판로 확보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시 겪는 어려움(설문조사) 】

□ 재배 임가(2,879가구)는 ‘판로 확보 어려움’(34.6%)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으며, ‘초기 자본 부담’(29.2%), ‘정보 부족’(29.0%)이 뒤를 따름

(중복응답, 단위 : %)



※ 자료: 임업후계자 현황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육성방안 연구(산림청, 2021)

이에 개정안은 임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에 기반한 체계적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15조제1항의 ‘국내산 임산물’ 관련 문구의 경우 ‘수입되는 상품은 국내원산의 동종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GATT 제3조(내국민대우) 제4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임산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동의하는 입장임.

7. 스마트임업 육성 및 지원센터 지정

개정안은 스마트임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스마트임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스마트임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홍보, 현장 컨설팅 등을 전담하는 스마트임업 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스마트임업”이란 임업의 생산성과 품질향상,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임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임업을 말한다.
<신설>	제17조(스마트임업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임업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스마트임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임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스마트임업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마트임업의 육성 목표 및 기

현행	개정안
	<u>본방향</u> <u>2. 스마트임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u> <u>3. 스마트임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u> <u>4. 스마트임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u> <u>5. 스마트임업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u> <u>6. 그 밖에 스마트임업 육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③ 산림청장은 스마트임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임업 육성지구(이하 “스마트임업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u> <u>④ 산림청장은 스마트임업 관련 사업을 스마트임업지구에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u> <u>⑤ 스마트임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18조(스마트임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스마트임업 분야에</u>

현행	개정안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임업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마트임업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스마트임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3. 스마트임업 관련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4. 스마트임업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5. 스마트임업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지원 6. 그 밖에 스마트임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현행	개정안
	<u>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u>2.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u> <u>3. 제2항에 따른 사업을 부실하게 하여 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 <u>⑤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임업은 접근성이 낮은 산지에 주로 이루어지며 계곡부·급경사지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하여 규모화·기계화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인력 투입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업종사자의 유입이 적어 임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²⁵⁾.

이와 같은 임업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임업의 스마트화(자동정밀화 및 무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²⁶⁾할 필요가 있다는 의

25) 임가인구(천명) : ('20) 233 → ('21) 219 → ('22) 210 → ('23) 204 → ('24) 200

65세 이상 임가인구(비율, %) : ('20) 37.7 → ('21) 44.2 → ('22) 48.8 → ('23) 52.8 → ('24) 56.4

26) 참고로 산림청은 2026년에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음.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음.

전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스마트임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스마트임업 육성지구 및 스마트임업 지원센터 등 관련 제도의 도입을 통해 체계적인 스마트임업 기술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6년에 산림청이 신규로 추진 예정인 스마트임업 관련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임가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임.

참고로, 부처별 스마트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음.

【 부처별 스마트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비교 】

구분	임업(산림청)	농업(농림축산식품부)	어업(해양수산부)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스마트 관련 법조문 없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7, 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스마트 관련 법조문 없음

□ 사업 개요

- 도입배경 : 첨단기술 등장과 기후변화, 수급 불안, 고령화 등 임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생산성·소득향상에 기여
- 사업목적 : ICT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임산물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임업인 교육·임대 및 용자 등을 포함한 창농까지 연계 지원, 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임산업에 청·장년층 진입 확대 기대
- 사업규모 : 총사업비 105억원/개소(약 4ha 내외 임대형 온실 구축, 3년차)
- 실행주체·지원조건 : 지자체(국고 50%, 지방비 50%)

※ 자료: 산림청

구분	임업(산림청)	농업(농림축산식품부)	어업(해양수산부)
주요 정책	○ 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시 스마트 임업 기계장비 및 시설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 - 임산물생산기반,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 '26년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예산반영(1개소)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 창업보육센터, 임대형팜, 실증단지를 기본으로, 연계사업(유통, 정주여건 등) 패키지 지원 ○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 기초이론부터 실습까지 장기 보육프로그램 ○ 노지스마트팜 시범운영 - 주산지에 실증, 장비지원 ○ 스마트농업 R&D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자격도입 등) ○ 스마트팜 보급지원(보조사업) 및 데이터기반 지원 - 온실, 과수, 축산농가 등 ○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 첨단양식기술 적용, 관련 산업 집적화 대규모단지(테스트베드, 배후부지) - 1개당 총사업비 400억원 ○ 청년진입유도를 위한 스마트양식기법 활용 지원 - 스마트양식 실습장 조성 - 임대형 스마트양식단지 조성 ○ 스마트양식 개발 및 시설지원 - 스마트양식 표준화 모델개발 - 스마트양식 자동설비 지원
예산 규모 ('25)	*스마트임업 관련 별도 예산 없음	○ 스마트원예단지 31억 ○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 13억 ○ 임대형 스마트팜 407억 ○ 청년창업 보육센터 80억 ○ 노지스마트농업 265억 ○ 스마트팜 실증단지 61억 ○ 데이터기반스마트농업확산 41억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및 빅데이터센터 구축 228억 ○ 임대형스마트양식단지 50억 ○ 스마트양식 실습장 20억 ○ 스마트양식모델개발 5억 ○ 스마트설비지원 58억
관련 기관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지자체 ○ 한국임업진흥원	○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 지자체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해양수산부, 지방어업관리단 ○ 지자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자료: 산림청

8. 임산물의 유통·수입 등에 관한 근거 마련

개정안은 임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수입할 품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임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할 품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과 그 밖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 관련 전문단체나 유통 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

현행	개정안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가격과의 차액(差額)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輸入利益金)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현행	개정안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벌칙) ③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개정안은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²⁷⁾에서 규정하는 임산물 수입 추천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이관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임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할 품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과 그 밖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 관련 전문 단체나 유통 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가격과의 차액(差額)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輸入利益金)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하여 하나의 법체계에서 통합함으로써 임업의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입 임산물의 추천 등은 임업인의 사유림경영을 통한 임산물 생산·유통 등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안 제19조제6항 및 제7항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 4²⁸⁾에 따라 수입이익금²⁹⁾에 관한 권리구제 절차³⁰⁾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다만, 안 제19조제5항은 ‘체납처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에 따라 ‘체납 처분’을 ‘강제징수’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19조제3항에 대하여 삭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 GATT 제2조(양허표) 제1항(b)에서는 ‘양허표에 명시되고 제시된 상품은 수입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과징금으로부터

28)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29)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임산물(밤 2,170톤, 잣 52.9톤, 대추 259.5톤)을 시장접근물량 양허세율 추천 시 저율(각 50%, 30%, 50%), 미추천시 고율(각 219.4%, 566.8%, 611.5%)로 수입권을 낙찰받은 자는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하고, 추천신청서 제출 및 추천서를 발급받아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함.

30) 2021년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담금운용평가 결과(각 부처의 11개 부담금에 대하여 제도개선과제 부여)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부담금에 관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입과 관련된 과징금인 수입이익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없으며, ② 동 규정은 GATT 제3조제4항(내국민대우)의 위반 소지도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에 대해 산림청은 임산물 수입 추천 제도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7조³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³²⁾·제16조³³⁾,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³⁴⁾에 따라

31)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림수산물 관세와 수입이익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소득 향상과 농어촌 발전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 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이익금이 과오납되는 등의 사유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34)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별표]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임산물 수입이익금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사안으로, GATT 규정의 위반 소지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되는 상기 법률의 개정이 있을 때까지는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³⁵⁾.

35) 산림청은 농수산물을 수입 추천하는 다른 부처도 동일하게 수입이익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함

9.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개정안은 제3장을 신설하고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① 사유림경영지도, ② 산림경영관리시설, ③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제3장 사유림경영의 활성화</u> <u>제22조(사유림경영지도 등)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사유림경영 지도업무를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사유림경영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사유림경영지도원”이라 한다)의 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유림경영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유림경영지도원을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부칙 <u>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현행	개정안
<신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산림경영관리시설의 설치) ① 임업인이 임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에 산림경영관리사, 재배시설 등 경영관리를 위한 시설(이하 “산림경영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유림경영관리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사유림경영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조림수종 선정 등 조림에 관한 사항 2. 기준벌기령, 입목수확구역 등 입목수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회의·운영 등에

현행	개정안
	<u>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u>

개정안은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사유림경영 활성화 등을 위한 ‘산림경영지도원’ 제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안으로 이관하고, ② 임업인이 임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경영관리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③ 조림에 관한 사항, 임목수확에 관한 사항 등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산유림경영 활성화 관련 사항을 일률적으로 동 법의 체계 내에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문의 이관 및 신설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하에서는 각 개정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였음.

가. 사유림경영지도 제도

현행 산림경영지도 제도는 산주·임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중심의 산림경영지도 추진을 통하여 사유림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임업소득 증대로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제도로,

【 산림경영지도 제도 개요 】

□ 추진내용

- 산주·임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중심의 산림경영지도 추진을 통해 사유림경영 참여 확대 및 임업소득 증대로 사유림 경영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1978년 ~ 계속
- 사업규모 : 산림경영전담지도원 255명, 일반산림경영지도원 613명
- 국고지원 : 국고보조 80 ~ 100%

□ 산림경영지도원의 역할

- 산림경영전담지도
 - 일반산림경영지도원의 업무와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으로 경영임지 확보를 위한 산주 컨설팅 및 동의, 대리경영, 행정대행 등 업무 전담
 - 주요 단기임산물에 대하여 신기술·경영기법을 결합한 지식기반 임업기술을 컨설팅하여 임업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 일반산림경영지도
 - 조림·숲가꾸기·임목생산 등 산림경영은 물론, 대리경영, 산림복합경영 등 산주·임업인의 다양한 기술지도 수요를 반영한 컨설팅 수행

□ 산림경영지도원 배치현황

- 전국 142개 지역 산림조합과 중앙회에 지도원 868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지역 조합당 평균 5.6명이 기술지도업무 수행
- * 중앙회 74명(전담 27, 일반 47), 142조합 794명(전담 228, 일반 566) 배치
- 정원변동 현황

구 분	1978	1983	1987	2002	2003	2004	2007	2012	2017	2020	2021	2023 ~
합계(명)	312	377	527	787	803	880	880	880	880	880	872	868
일 반	312	377	527	787	803	880	840	820	711	673	617	613
특 화	-	-	-	-	-	-	40	60	-	-	-	-
전 담	-	-	-	-	-	-	-	-	169	207	255	255

* '07~'16년까지 운영하던 특화품목전문지도원은 '17년 전담지도원으로 통합

※ 자료: 산림청

개정안은 제도의 명칭을 변경(산림경영지도 → 사유림경영지도)하고, 기존의 보조사업 방식을 위탁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음³⁶⁾.

3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은 안 제22조제1항 ‘산림청장은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사유림경영 지도 업무’에 포함되어 삭제함.

【 ‘산림경영지도원’ 및 ‘사유림경영지도 등’ 조문 비교 】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 정 안
<u>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u> <u>④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	<u>제22조(사유림경영지도 등)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사유림경영 지도업무를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u> <u><삭 제></u> <u>② 제1항에 따른 사유림경영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사유림경영지도원”이라 한다)의 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유림경영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유림경영지도원을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동 제도의 명칭을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산림경영지도’ 명칭은 국유림·공유림·사유림의 구분없이 경영지도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사유림경영지도’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산림경영지도는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이므로 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위탁사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³⁷⁾.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전문성을 확보하였고³⁸⁾, 보조율 하향 등 책임성을 강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탁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산림청은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임.

나. 산림경영관리시설의 설치

임업 현장에서 산림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장비, 종자, 묘목 등 임업자재의 보관 및 휴식·작업대기를 위한 간이시설물로 산림경영관리사³⁹⁾를 설치하고 있음.

37) 유사사례: 해양수산부(수협) 소관 어선안전조업지원을 보조사업에서 위탁사업으로 전환(2019년)

3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9)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함. 산림청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라목은 해당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과 최소한의 규제기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산림경영관리사 등을 조성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므로 관련 시설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참고: 산림경영관리사 목적 외(주거용) 설치 등 부정수급이 다수 적발되어 '22년부터 보조사업에서 제외, '19년 국조실 합동점검 시 18건 적발)

그 외에도 산림경영을 위해 작업로, 운반로, 울타리 등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의 종류나 기준이 부재하므로 법령에서 이를 규정하여 산림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하게 경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산림경영관리시설의 종류 】

① 산림경영관리사

* 산림경영관리사 :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인 시설을 말한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목적) 산림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장비, 종자, 묘목 등 임업자재의 보관 및 작업인력의 휴식·작업대기를 위한 간이시설물
- (현행기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 부지면적 2백제곱미터 미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 25% 이하(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 * 주거용이 아니어야 하며,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 간이처리시설

②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 (목적) 임산물 재배관리 및 운반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길
- (현행기준) 너비 3미터 이내(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③ 울타리

- (목적) 단기소득작물 재배 시 도난, 야생동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배구역 경계를 따라서 설치하는 시설
- (현행기준)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및 대피소

< 주요 산림경영관리시설 설치 사례 >

		
산림경영관리사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밤)	울타리

※ 자료: 산림청

이에 개정안은 임업인이 임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에 산림경영관리사, 재배시설 등 산림경영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과 설치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각 시설의 합법적인 조성 및 지원을 통해 사유림을 경영하는 임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임.

다.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현재 사유림경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임업인단체·협회, 관계 기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에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나 입장을 조정·통제·합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은 조립에 관한 사항, 입목수확에 관한 사항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각 사항들에 관한 의사결정에 앞서 사유림경영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의 객관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결격사유 및 정수, 회의의 운영 방법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항은 조립 및 입목수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각 시·도가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임.

10.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현행법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제외)로 하여금 산촌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산촌진흥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산촌진흥계획의 수립권자에서 산촌이 없는 지역의 시·도지사를 제외하고, 산촌진흥촉진계획의 수립권자에서 산촌이 없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u>시·도지사의</u> 의견을 들어 <u>10년에 한 번씩</u>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⑦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24조, 제25조 및 제28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제4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u>지방자치단체의 장의</u> 의견을 들어 <u>10년마다</u>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⑥ (현행과 같음) ⑦ 시·도지사(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산촌이 없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44조, 제45조 및 제50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u>시·도 산촌진흥계획</u> (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산촌이 없는 지역

현행	개정안
고려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군·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u>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44조부터 제47조,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u>)은 시·도 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군·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⑨ (생략)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⁴⁰⁾을 의미함.

우리나라 전국에는 총 468개의 읍·면이 산촌에 해당하며, 면적은 426만ha로 전 국토의 43%를 차지하고 인구는 135만명으로 전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은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산촌 진흥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산촌이 존재하지 않는 지방

40)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151명/km²) 이하일 것,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23.5%) 이하일 것

자치단체⁴¹⁾에도 수립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 지역별 산촌 현황(2024년도 기준)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시·도	12	-	1	1	1	-	-	1	-	1	1	1	1	1	1	1	1	-
기초지자체	108	-	1	2	1	-	-	1	-	8	15	9	8	9	16	21	17	-
산촌 읍·면	468	-	1	7	3	-	-	4	-	19	93	41	19	46	53	112	70	-

※ 주: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전 지역에 산촌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1개소가 존재함

※ 자료: 산림청

이에 개정안은 산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촌진흥계획 및 산촌진흥촉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도록 수립권자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불필요한 계획 수립·보고 의무를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촌지역에 실효적인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산림청도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임.

41)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전 지역에 산촌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1개소가 존재함

11.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 정비

개정안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현행화하고,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준정부기관의 의무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 52조~제54조).

현행	개정안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u>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u> ①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u>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 유통·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u> 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u> ①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임업인의 <u>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u> 2. <u>삭제</u> <2012. 5. 23> 3.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제7장 한국임업진흥원 <u>제52조(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u> ①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u>임업소득 증대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u> 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53조(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u> ①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임업인의 <u>산림경영정보 및 임업·산림에 관한 정보·통계의 생산·활용 지원</u> <u><삭제></u> 2.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0

현행	개정안
<u>및 제18조의7의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u> <u>3의2. 품질인증</u> 4.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 5.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6.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평가 <u>6의2.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u> <u>6의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관리 및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u> 7. 임업·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8.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u><신 설></u>	<u>조의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품질검사 및 유통관리 지원</u> <u>3.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u> 4.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 5.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6.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평가 7. 해외산림자원개발, 국제산림협력사업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국제감축 사업 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관리 9. 임업 분야 및 산촌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0. 임산물 및 임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의 홍보·판매촉진 지원 11. 임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관리 및 지

현행	개정안
<u><신설></u> 9. 그 밖에 임업·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한국임업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	원 12.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그 밖에 임업·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 국유임산물을 한국임업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

현행	개정안
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을 신청하거나 성적증명서의 발급 등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u>제29조의4(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u>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임업진흥원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u>제29조의3제1항과</u>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2.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집행 및 예산편성과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을 신청하거나 성적증명서의 발급 등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u>제54조(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u>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임업진흥원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u>제53조제1항과</u>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2. <삭 제> 2.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집행 및 예산편성과 결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행	개정안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한국임업진흥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한국임업진흥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2022. 12. 20.)에 따라 2023년 2월 3일부터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고,

2012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기관의 업무영역은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조항별 세부 개정 취지는 다음과 같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한국임업진흥원 관련 조항의 세부 개정 취지 】

조문	개정 취지
안 제53조 제1항제1호	「데이터기반행정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 활용에 대한 책임과 역할 강화가 요구되었지만 기존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개정안 제53조제1항제1호에 “임업·산림에 관한 정보·통계의 생산·활용 지원”으로 수정하여 사업 범위를 개선할 필요
안 제53조 제1항제2호	기존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및 제18조의7이 각각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외에도 품질검사 및 유통관리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해당 업무는 빠져있어 추가할 필요
안 제53조 제1항제3호	기존 「임업진흥법」 제3항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을 의미하였으나 관련 조문이 삭제 및 「산림자원법」 이관 예정에 따라 개정안 제53조제1항제3호에 “임업기계장비”를 추가하여 사업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
안 제53조 제1항제7호	국제감축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전담기관 지정 조항을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제7항에 의거해 업무 위탁 규정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정 필요
안 제53조 제1항제8호	「탄소흡수원법」 제23조제1항제2호 개정('23.8.16)에 따라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이 삭제되었으므로 개정 필요
안 제53조 제1항제9호	임업은 분야를 의미하고 산촌은 지역을 의미하므로 각각을 명확히 구분되도록 개정 필요
안 제53조 제1항제10호	「산림자원법」 제2조제7호에 정의된 임산물에 대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닌 임산물 가공유통 선정·활성화 업무, 시장친화형 상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업무 등 임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에 대한 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개정 필요
안 제53조 제1항제11호	기존 제9조의2부터 제9조의3에 관한 임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임업 교육 및 재배기술 지도, 전문교육기관 관리·지원 업무, 제17조의2 제1항에 관한 임업·산림분야 계열학교 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신설할 필요
안 제53조 제1항제12호	타 법에 따른 사업 및 국가로부터 위탁된 사업은 「임업진흥법」에 있는 임업진흥원 사업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사업 범위로 보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신설할 필요
안 제53조 제3항	「임업진흥법」 일부개정안('24.10.23,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유임산물을 한국임업진흥원이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할 필요
안 제54조 제1항제2호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22.12.20)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23.2.3)되어 「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에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관련내용을 삭제할 필요

다만, 안 제53조제1항제8호의 경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⁴²⁾가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임.

42) 탄소흡수원법 제23조제1항제2호 : (개정 전)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 (개정 후) 산림탄소 흡수량 검증 전문인력의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12. 기타 검토 사항

개정안은 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대상을 기존의 ‘국산재로 만든 제품’에서 ‘산림인증을 받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 및 가공품’으로 변경하고, ②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에 폐기 또는 반송 명령 외에 판매정지도 추가하며, ③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목적 및 사업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안 제28조, 안 제31조, 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① 산림청장 또는 <u>시·도지사</u>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u>국산재로 만든 제품</u>의 판매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u>시·도지사</u>는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u>공공기관</u>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제1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① 산림청장 또는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u>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7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u>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 및 가공품</u>의 판매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u>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현행	개정안
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u>제18조의5(폐기명령 등)</u> ① 산림청장은 <u>제18조의4제1항</u>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한 결과 <u>제18조의3제2항을</u> 위반하였거나 <u>제18조의4제3항에</u>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u>폐기</u> 또는 반송 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생산자: 생산신고한 구역에서 재배하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전부 또는 <u>일부 폐기</u> 2. 수입자: 수입신고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전부 또는 <u>일부 폐기 또는 반송</u> ② 제1항의 <u>폐기명령</u>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명령받은 내용대로 특별관리임산물을 <u>폐기</u>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는 관계 공무원이 <u>입회한</u> 자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제2항의 <u>폐기</u> 또는 반송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특	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u>제28조(폐기명령 등)</u> ① 산림청장은 <u>제27조제1항</u>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한 결과 <u>제26조제2항을</u> 위반하였거나 <u>제27조제3항에</u>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u>판매정지, 폐기</u> 또는 반송 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생산자: 생산신고한 구역에서 재배하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전부 또는 <u>일부</u> 2. 수입자: 수입신고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전부 또는 <u>일부</u> ② 제1항의 <u>판매정지, 폐기</u>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명령받은 내용대로 특별관리임산물을 <u>판매정지, 폐기</u>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는 관계 공무원이 <u>참관한</u> 자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제2항의 <u>판매정지, 폐기</u> 또는 반송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

현행	개정안
별관리임산물을 폐기할 수 있다. <u>제18조의8(정보공개)</u>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u>제18조의3</u>에 따른 생산과정의 확인 내역 2. <u>제18조의4제1항</u>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 3. 제18조의5에 따른 <u>폐기</u> 또는 반송 명령의 내용 <u>제27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u> ① 산림청장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지역경제의 <u>활성화</u>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u>제29조의2</u>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그 밖에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을 폐기할 수 있다. <u>제31조(정보공개)</u>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u>제26조</u>에 따른 생산과정의 확인 내역 2. <u>제27조제1항</u>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 3. 제28조에 따른 <u>판매정지, 폐기</u> 또는 반송 명령의 내용 <u>제49조(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u> ① 산림청장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지역 경제의 <u>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향상</u>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u>제52조</u>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그 밖에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현행	개정안
②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2.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기술 지원 3.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지원 4. 그 밖에 산촌주민에 대한 지원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②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2.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기술 지원 3.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지원 4.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임업 기술 지원 5. 그 밖에 산촌 주민에 대한 지원 및 산촌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현행	개정안
경우 4. 제29조의5를 위반하여 산림청장에게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우 4. 제55조를 위반하여 산림청장에게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산림청은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산림을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바탕으로 한 산림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한국산림인증제도 개요 】

- (배경) 브라질 리우 세계정상회의('92년)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원칙"의 채택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형 산림인증제도(KFCC) 도입('16년)
- (목적) 임업의 경제·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촉진을 통한 산림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 도모
- (개념) 산림경영(FM) 인증림에서 나온 원료의 생산·가공·유통(CoC)의 전 과정을 추적 및 관리하여, 최종제품에 인증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소비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책임 생산 활동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유형) '산림경영(FM)'과 '임산물 생산·유통(CoC)'인증으로 구분

구분	산림경영(FM)인증	임산물 생산·유통(CoC)인증
정의	· 산림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는지의 여부를 평가	· 인증림에서 나온 원료의 생산·가공 등 전 과정의 추적성 관리 여부 평가
인증 대상자	· 산림 소유자(국·공·사) · 산림경영자	· 원료 생산·가공·유통 기업 · 제품 생산 기업

※ 자료: 산림청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대상을 단순히 국산 재로 만든 제품이 아니라 산림인증을 받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 및 가공품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기업의 책임있는 운영과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6조제2항의 '우선구매'와 관련하여⁴³⁾,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국내산 임산물 우선 구매 조치는 WTO 정부조달협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림청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임.

43) 다만 동 내용은 개정되는 내용에 해당하지는 않음.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현행법도 국내산 임산물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음.

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추가

현행법은 생산자 및 수입자의 특별관리임산물⁴⁴⁾ 품질검사 이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검사 결과 사용이 금지된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였거나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의도적인 농약 오염, 품질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등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 상의 폐기 또는 반송 명령 뿐만 아니라 판매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에 폐기 또는 반송 명령 외에 판매정지도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조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산림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임.

44)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없으며, 이에 현행법에 예시된 ‘산양삼’만이 특별관리임산물에 속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3.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목적 및 사업 추가

현행법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 또는 중앙회 등을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2개 기관이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음.

【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 현황 및 역할 】

구 분	한국임업진흥원	(주)청년파트너스
지정 및 운영주체	2021년 한국임업진흥원 지정/ 공공기관	2025년 5월 민간 1호/ (주)청년파트너스
운영목표	전국 광역 거점 기반 전국적·기술·정보 중심	충북 지역맞춤·청년창업·공동체 중심
교육·컨설팅	귀산촌 및 산촌 정책 전반 교육, 컨설팅제공, 일자리 연결	귀산촌 교육, 산주학교, 산촌공 동체 육성 등 특화사업 운영
청년 창업 지원	‘청년 임업인 취업지원 프로그 램’ 운영	청년창업 사업 계획중
거점 인프라 역할	공간정보, 기술·정책 홍보 기반 제공	산촌공동체 육성, 자립 지원
네트워크 및 확장	광역거점 역할 수행 목표	민간-지자체 협업 모델로 시범 운용, 확장 기반 구축 기대
예산지원(국비)	없음	없음

※ 자료: 산림청

한편, 농가소득 대비 낮은 임가소득, 높은 노동강도 대비 낮은 수익성, 제한적인 시장 접근 등의 사유로 산촌 정착 유인이 낮은 가운데,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임업기술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사업은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는 바, 개정안은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임업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임업인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귀산촌하여 임업을 하려는 사람과 기존 임업인의 지속 경영과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임.

13. 다른 법률로의 이관 사항

개정안은 임업기계장비, 산지목재비축,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임업기능인 양성 관련 규정 등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삭제(불필요한 내용 단순 삭제 포함)하려는 것임[제2조제3호의4, 제4조제5호의2,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3장의2(제18조의11부터 제18조의17까지) 및 제4장(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4.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부 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삭 제>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①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임업기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업기계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삭 제>
1. 임업기계화 장기 대책 목표 및 추진방향	
2. 임업기계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임업기계장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임업기계장비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6. 임업기계장비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	
7.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교육 및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	

현행	개정안
· 보급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품질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및 유효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3(품질인증의 표시)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임업기계장비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품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u>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u> <u>2. 제18조의12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u>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u> <u>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16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u> <u>③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④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및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u>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u> <u>2. 업무정지 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u> <u>3.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u> <u>4.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u>5.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u> <u>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지</u>	<u><삭 제></u>

현행	개정안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	<삭 제>

현행	개정안
<u>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 <u>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u> <u>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u> <u>제13조(산지목재비축계약 등) ① 시·도지사는 산림 안에 있는 입목을 보호·육성하여 목재 자원을 증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재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저당권 등 입목에 관한 권리제한이 있는 산림의 소유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일정한 기간은 입목의 벌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이하 “산지목재비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u> <u>②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u>	<u>제6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임업인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 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있는 산림의 범위, 입목의 축적·수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③ <u>시·도지사는 산불·수해·병해충 피해 등으로 입목이 소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u> ④ <u>시·도지사는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소유자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⑤ <u>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입목을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u> ⑥ <u>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변경·해제, 저당권의 설정 및 보험가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u>제14조(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시·도지사는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목이 있는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u>	<삭 제>

현행	개정안
2. 산림 안의 주차휴양단지의 조성사업 3. 목조주택전원단지의 조성사업 4. 그 밖에 임업진흥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나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 1. 산림청장: 국유림,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림 및 사유림 2. 시·도지사: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3. 시장·군수·구청장: 3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② 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u> <u>1. 지정 목적을 달성한 때</u> <u>2.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u> <u>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 의무를 면제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때</u> <u>4.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u> <u>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u>	<u><삭 제></u>

현행	개정안
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별 진흥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사유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행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	
제21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	<삭 제>

현행	개정안
<u>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u>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는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벌채·조림·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지정 목적에 알맞게 관리하여야 한다.</u> ③ 산림청장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u>지정목적</u>을 달성하여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으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u>지정목적</u>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공용·공공용시설</u>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산림청장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 ①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 등 기능인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삭 제> 부 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임업기능인의 양성)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 등 기능인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삭제	

현행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목재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목재를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임업인의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음.

또한, 제2조제3호의4, 제4조제5호의2 및 제3장의2(제18조의11부터 제18조의17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임업기계장비의 이용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사항은 임업의 기계화가 작업자의 노동부담 경감, 단위생산량 증대를 위해 산림사업에 필요한 임업기계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 취지 및 목적(내용과 분야)이 다름에도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고,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임업기능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은 임업기능인은 대부분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아 산림사업시행업에 고용되어 산림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이원화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적용에 혼선이 있으며,⁴⁵⁾

제2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 관한 사항은 합판용, 국가유산복원용, 표고자목용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유림에만 적용하고 있는 제도로 목재의 벌채, 이용 등 산림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⁴⁶⁾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해당 조문 삭제를 통해 각 법률의 전체적

45) 임업기능인 관련 법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음.

- 산림기술자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산림기능장), 기능1급(산림기능사), 기능2급(6주교육)
- 산림사업시행업 : 산림조합, 국유림영림단, 산림사업법인
- 산림사업 : 산림조성 사업(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방제 등

46)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 지정현황('23년말) : 총 173개소, 4,819ha

- 국가유산복원용 49개소(680ha), 합판용 7개소(217ha), 표고자목용 117개소(3,922ha)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지정할 것

이고 일관된 방향성과 내용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2조제3호의4, 제4조제5호의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3장의2(제18조의11부터 제18조의17까지) 및 제21조의2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제18조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16조(산림의 이용·지원)의 지원 대상 사업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이고,⁴⁷⁾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임업진흥권역에 관한 사항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조림·육림, 생산기반 조성 등이 필요한 지역에 1988년부터 임업진흥권역을 지정·운영하였으나, 2018년 이후 진흥권역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임업진흥권역의 64%가 경제림육성단지⁴⁸⁾와 중첩(2023년 기준)되며, 임업진흥권역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제도가 부재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파악됨.

4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⑥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주차휴양단지는 사례 없음)

제20조(산림육장등의 조성) ⑦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육장등조성계획에 따라 산림육장등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增殖)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개별법에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16조(산립의 이용·지원)와 제도의 실효성을 상실한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삭제하여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고 있음.

참고로 개정안은 제2조제3호의4(‘임업기계장비’의 정의) 및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의 경우, 부칙 제4조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바,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던 사항 중 일부사항을 해당 법률에서 규율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고 할 때 그 다른 법률의 정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14. 보칙 및 벌칙

개정안은 보칙과 벌칙과 관련하여 조문 간 상호 연관 관계와 개정 방향에 맞춰 조문을 이동하거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61조).

현행	개정안
<u>제7장 보칙</u> <u>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산립청장은</u> <u>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u> <u>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원</u> <u>센터로 하여금 사업 관련 보고 또</u> <u>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u> <u>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u> <u>업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u> <u>있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제30조(청문) 산립청장은</u>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u>제8장 보칙</u> <u>제55조(보고 및 검사) ① 산립청장은</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u>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감독하기</u> <u>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u> <u>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u> <u>소 등을 출입하여 서류나 물건을</u> <u>조사·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u> <u>문하게 할 수 있다.</u> 1. 제19조에 따라 산립청장의 추천 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자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u>제56조(청문) 산립청장, 시·도지사</u> <u>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권</u> <u>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u>

현행	개정안
<u><신설></u> 1.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7조제3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u>임업후계자 및 독립가의 선발 또는 선정의 취소</u> 3. 제18조의14에 따른 <u>품질인증의 취소</u> 4. 제18조의16에 따른 <u>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업무의 정지</u> 5.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u>지원센터의 지정취소</u> 제3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3.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u>품질인증</u>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15제2항에 따라 <u>품질인증기관</u>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4항에 따른 <u>스마트임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u>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3. 제37조제3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u>전문임업인 및 경영임업인</u>의 선발 또는 선정의 취소 <u><삭제></u> <u><삭제></u> 4. 제49조제4항에 따른 <u>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u> 제5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2.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u><삭제></u> <u><삭제></u>

현행	개정안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1.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29조의3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 제8장 별칙 제32조(별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삭 제> <삭 제> 제9장 별칙 제60조(별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현행	개정안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4.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였거나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와 제1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 2.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28조제2항에 따른 판매정지, 폐기, 재검사 또는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4. 제29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였거나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와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현행	개정안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삭제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생산과정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 2.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 3. 제1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생산과정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 3.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

현행	개정안
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5.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제18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지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삭 제> <삭 제>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지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기 시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단순 조문 이동이 있거나 인용 조문이 변경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임.

참고로 조항별 세부 개정 취지는 다음과 같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보칙 및 벌칙 조항의 세부 개정 취지 】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u>제7장 보칙</u> 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u>산림청장은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업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u> <신설> <신설> <신설> 제30조(청문) <u>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u>	<u>제8장 보칙</u> 제55조(보고 및 검사) ① <u>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서류나 물건을 조사·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u> 1. 제19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자 ② <u>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 제56조(청문) <u>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u>	○ 중복되는 문구 단순화(“사업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 → “필요한 보고”) ○ 원활한 검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검사권한 구체화 및 확대(사무 관련 업무 검사 → 출입 및 사무 검사, 관계인에게 질문 가능) ○ 수입 임산물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 확대 ○ 현행 제29조의5 본문을 개정안 제55조제2호로 이동 ○ 원활한 검사와 수검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무원이 조사·검사권한이 있음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조항 신설 ○ 관련 사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청문에 따라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u><신설></u> 1.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7조제3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u>임업 후계자 및 독립가의 선발 또는 선정의 취소</u> 3. 제18조의14에 따른 <u>품질인증의 취소</u> 4. 제18조의16에 따른 <u>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u> 5.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u>지원센터의 지정취소</u> 제3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3.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u>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u> 4. 제18조의15제2항에 따라 <u>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u>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여야 한다. 1. 제18조제4항에 따른 <u>스마트임업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u>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3. 제37조제3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u>전문임업인 및 경영임업인의 선발 또는 선정의 취소</u> <u><삭제></u> * 산림자원법으로 이관 <u><삭제></u> * 산림자원법으로 이관 4. 제49조제4항에 따른 <u>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u> 제5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2.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u><삭제></u> * 산림자원법으로 이관 <u><삭제></u> * 산림자원법으로 이관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 신설되는 스마트임업 지원센터도 다른 지정사항과 동일하게 청문을 통하여 지정취소하도록 규정 ○ 단순 조항 번호 조정 ○ 임업인 체계 개편안에 따른 명칭변경 반영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의 취소·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 「산림자원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문 삭제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의 취소·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 「산림자원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문 삭제 ○ 축약어 사용 지양하고 정확한 명칭 사용 ○ 단순 조항 번호 조정 ○ 단순 조항 번호 조정 ○ 단순 조항 번호 조정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을 「산림자원법」에 이관함에 따라 조항 삭제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을 「산림자원법」에 이관함에 따라 조항 삭제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u>제31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1.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29조의3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 <u>제8장 벌칙</u> <u>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u>제59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u><삭 제></u> * 산림자원법으로 이관 <u><삭 제></u> * 제1호의 산림자원법 이관에 따라 본문에 명시 <u>제9장 벌칙</u> <u>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 2.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 공공성이 높은 업무로서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임업진흥원 직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규정 명시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을 「산림자원법」에 이관함에 따라 관련 벌칙조항 삭제 ○ 각 항의 내용을 별도의 호·항으로 구분하지 않고 본문으로 이동 ○ 단순 조항 번호 조정 ○ 단순 조항 번호 조정 ○ 단순 조항 번호 조정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4.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였거나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와 제1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 산림자원법(제76조)에서 이관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삭제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을 기록·	따른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28조제2항에 따른 판매정지, 폐기, 재검사 또는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4. 제29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였거나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와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삭 제></u>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을 기록·관리	○ 개정법률안 제28조에 품질검사 부적합 대상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한 것을 별칙조항에도 반영 ○ 단순 조항 번호 조정 ○ 단순 조항 번호 조정 ○ 「산림자원법」에서 이관된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임산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별칙조항 이관·신설 ○ 단순 조문정리(삭제조항 삭제, 기존 제33조제4호를 본문에 포함) ○ 제1호~제3호 삭제에 따라 제4호의 내용을 제4항 본문으로 이동 ○ 단순 조항 번호 조정 ○ 단순 조항 번호 조정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관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생산과정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 2.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 3. 제1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5.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제18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지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하지 아니하였거나 생산과정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 3.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삭 제> * 산림자원법으로 이관 <삭 제> * 산림자원법으로 이관 <삭 제> * 산림자원법으로 이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지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단순 조항 번호 조정 ○ 단순 조항 번호 조정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을 「산림자원법」에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을 「산림자원법」에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을 「산림자원법」에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 단순 조항 번호 조정 ○ 단순 조항 번호 조정 ○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통칭

15. 부칙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1년)과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일반적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제5조).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위반 행위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조사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18호를 삭제한다. ②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4호를 삭제한다.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개 정 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⑥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0호를 삭제한다.

⑦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3호를 삭제한다.

⑧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제36조의5제1항제1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9호의2를 삭제한다.

⑪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2호를 삭제한다.

⑫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임업기능인의 양성)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개 정 안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 등 기능인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 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⑯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립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 등”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전문임업인, 경영임업인 등”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6항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개 정 안

제76조를 삭제한다.

⑮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7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⑯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2호를 삭제한다.

⑱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3)을 삭제한다.

⑳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㉒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㉓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 정 안

제56조제1항제19호를 삭제한다.

㉓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1호가목 9)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2호를 삭제한다.

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㉖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1호를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하위 법령의 마련 및 신설되는 제도의 도입을 위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 부칙 제2조는 개정안 시행 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와 그 행

정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행위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바, 개정안 부칙 제2조를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부칙 제3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 처분, 절차, 조사 등의 행위가 개정된 법률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가 법적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여 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 부칙 제4조는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시행 시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는 조항이나 용어 등도 개정되어야 하는 경우 법 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제335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로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음.

개정안 부칙 제5조는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규정을 인용하도록 일괄적으로 대체함으로써, 법률 제명 및 조문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4